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 정 2016. 06.

개 정 2017. 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2017.3.1.개정) 및 본교 학칙 제39조3항에 근거하여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05.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7.05.01.)

1. "현장실습수업"(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이란 본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개정 2017.05.24.)
2. "실습학기제"란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연속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신설2017.05.24.)
3.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개정2017.05.24.)
4.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 교육지원비용을 말한다.(개정2017.05.24.)
5.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본교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조직을 말한다.(개정2017.05.24.)

제3조(적용제외 및 우선적용) ①이 규정은 학부과정 외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17.05.24.)

②「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은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2017.05.24.)

③이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적용 제외대상 범위 외 본교 학부(과)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실습·실습·실기 과목(외부 실습 포함) 및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습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현장실습 운영(개정2017.05.24.)

제4조(현장실습 구분) ①현장실습은 학기 수업의 일부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실습도 포함한다.(개정2017.05.24.)

②현장실습은 필요한 경우 학기단위(여름·겨울학기 포함)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7.05.24.)

제5조(현장실습 운영 방법) ①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05.24.)

②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개정2017.05.24.)

③실습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실습 시설·설

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신설2017.05.24.)

④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신설2017.05.24.)

- 가. 현장실습 수업계획
- 나. 수강신청 계획
- 다.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
- 라.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 마.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 바.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실습기관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신설 2017.05.24.)

제6조(현장실습 운영시간) ①현장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5.24.)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 ②현장실습은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17.05.24.)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2항에서 정한 실습학기제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연속 4주이상 전일제(1일6시간이상)로 하여야 한다.(개정2017.05.24.)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7.05.24.)

- ②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05.24.)
- ③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17.05.24.)
- ④(삭제2017.05.24.)

제8조(현장실습생) ①현장실습 대상은 2학년이상 재학생으로 한다(외국인유학생(복수학위과정생 및 교환학생 등)포함). 다만, 제2조2호에서 정한 ‘실습학기제’의 대상은 3학년이상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17.05.24.)

②현장실습 이수자는 제1항의 대상자 중 현장실습 신청 해당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③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7.05.24.)

1.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및 본교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④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개정2017.05.24.)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9조(실습 내용 변경 등) ①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습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실습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05.24.)

②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5.24.)

1. 무단결석 등 현장실습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2. 제5조 제4항의 수업계획에 따른 실습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제10조(현장실습의 평가 등) ①현장실습의 평가를 위해 학생의 현장실습 평가 기준을 실습기관에 안내하고,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제출 받아 학점에 반영한다.

②실습기관에서 자체 기준,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요청 한다.

③기타 현장실습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실습학기제의 대상 및 학점 등)(신설2017.05.24.)실습학기제의 대상 및 학점 이수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실습학기제 운영(신설2017.05.24.)

제12조(실습학기제 구분)(신설2017.05.24.) ①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 중 학칙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 운영하며, ‘현장실습’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정보 공시 대상인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4주 연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를 문제없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실습학기제 운영 방법) ①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절차에 따라 운영 한다.(개정2017.05.24.)

1.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
2.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산업체 수요 조사 및 접수
3. 실습학기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
4.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접수
5.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선발
6.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
7. 실습학기제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실습기관별 실습학기제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
9. 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0.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생 출석부,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

11.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12.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

②(삭제2017.05.24.)

③제1항에서 정한 운영절차 및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실습학기제와 협약)(신설2017.05.24.) ①제5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현장실습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협약 시행에 있어 본교 및 실습기관은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 근거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제15조(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신설2017.05.24.) 본교는「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제15조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을 진행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제15조(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 ① 실습기관은 실습학기제 운영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운영 계획을 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
3. 현장실습 대상 전공, 인원 및 학년
4.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내용
5. 현장실습지원비 및 현장실습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 운영한다.

1.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절차
2. 현장실습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배치
3.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4.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
5. 현장실습생 지도, 출석 및 평가 관리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출결, 교육운영, 실습평가 및 현장실습생 보호를 담당하는 실습기관 교육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실습기관은 교육담당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한다.

제16조(학생 보호) ①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한다. 단,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학교의 보험 가입을 갈음할 수 있다.

③기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에 대한 보건·안전·환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행 한다.

제17조(국외 현장실습) ①국외 현장실습 운영 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7.05.24.)

1. 수행국가에서 정한 법령과 관련된 사항.
2.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본교 학칙에서 정한 사항.

②국외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이수확인서 등의 보고와 함께 국가에서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2017.05.24.)

제18조(현장실습 증명 발급) 현장실습 이수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2017.05.24.)

1. 현장실습 개설 년도, 학기 및 과정 정보
2. 실습기관명, 현장실습 기간, 내용 등
3. 학생 정보 및 이수 학점 수 등

제4장 현장실습 지원체계(신설 2017.05.24.)

제19조(지원센터)(개정2017.05.24.) ①체계적 현장실습 관리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한다.

②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
5.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6.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
7.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③지원센터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운영 계획서를 검토하고 실습기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실시 중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 (개정 2017.05.24.)

⑥(삭제2017.05.24.)

⑦(삭제2017.05.24.)

⑧기타 지원센터 운영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현장실습 세부 운영 사항 및 각 조문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습지원비의 특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수행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실습지원비 외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학점 인정의 특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점 인정 학기 적용 방식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한다.